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자치행정과-4207 |
| 결재일자 | 2015.3.10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|

| 주무관 | 자치행정담당 | 자치행정과장 | 행정국장         |  |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이노영 | 위상복    | 박성도    | 03/10<br>손정수 |  |  |
| 협 조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|  |

##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

2015. 3.

**행 정 국**  
**자치행정과**

##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

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I 추진근거

-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
- 시장.군수.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
- 행정자치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(주민과-1264, '15.03.04)
- 서울시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(자치행정과-4846 '15.03.05)

### II 기본방침

-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금년 상반기 재·보궐선거( '15.04.29)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
- 전국 동시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
-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,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조치

### III 추진개요

○ 추진기간 : ' 15. 3. 11(수) ~ 4. 24(금) [45일간]

○ 추진내용
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 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
 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    - ※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완료
  -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(국토부, 부동산시스템연계)
- '14년 1월~ '15년 2월 기간의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,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
- '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조치
  - 비주택(쪽방, 비닐하우스 등)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
- 주민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지도·점검

○ 추진기관 및 체계

#### [ 구 청 ]

- 담당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
- 추진계획 수립, 동 지원 및 직원교육, 현장지도
- 직원 및 통장 사기진작책 마련
- 구 홍보지, 게시판,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

#### [ 동 주민센터 ]

-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
-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, 민원안내

- 각종 회의 개최시(통장, 관련 단체 등) 홍보
-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별 담당공무원의 통·반장 지원

### IV 세부추진계획

#### < 추진절차 >

##### ① 사실조사

- <1> 담당공무원과 통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
- <2> 세대명부 출력 후 전(全) 세대 조사
- <3>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실시

##### ② 최고·공고,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

##### ③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

- ※ 세대명부(세대주)는 생년월일만 표기, 개인정보보호에 안전

#### 1. 사실조사 : 3.11(수) ~ 3.31(수)[21일간]

○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

##### - 합동조사반 편성

- 조사자 :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·반장
-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
  - ※ 조사시작 전일까지 조사원증명서 발급 및 조사완료 후 회수 조치

##### - 사전교육 실시

-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
  - ※ 특히,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사실조사 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 자체교육 강화

-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
-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**안내표\*** 부착
  - ※ **안내표** : 동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, 재방문일시 등이 기재된 안내문

<1차> 통·반별 **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** 실시

○ **전(全)세대 사실조사 : 3. 11~ 3. 24 [14일간]**

- 세대명부에 의거,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실시
- 세대주 부재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,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
- 축물 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 중점 확인
- 현역입영자, 국외이주자,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

<2차>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

○ **개별조사 : 3. 25 ~ 3. 31 [7일간]**

-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
-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,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,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여 철저한 사실 조사 및 자료수집
-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**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조사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**

**2. 최고·공고,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**

○ **최고·공고 : 4. 1(수) ~ 4. 19(일) [19일간]**

- 대 상 :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
- 방 법
  - 최고장 발송 :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(7일 이상,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)
  - ※ **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**
-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(7일 이상) : 최고장이 반송된 자
  - ※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을 보관 (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)

○ **직권조치 및 정리 : 4. 20(월) ~ 4. 24(금) [5일간]**

-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
- 거짓신고자,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
-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,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
-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: 영 제25호 서식 활용
-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,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 (예, 홍길동→홍\*동, 제갈공명→제갈\*명)하여 **개인정보보호에 만전**
-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
- 성북아선거구(장위3동, 석관동) 4.29(수) 재·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일(4.7~4.11) 전까지 주민등록표 정리 완료 조치
- ※ 주민등록관리시스템 → 93.선거 → 9355.주민오류자료 - 통반오류자료 등

### 3. 과태료 경감 : 3. 11(수) ~ 4. 24(금)[45일간]

○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, 제40조제3항에 의거 **과태료의 2분의 1**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**원칙**으로 하되,

-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**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**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, 그 결과,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

### <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>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

### < 과태료 부과금액 >

제21조(과태료)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
▷ 신고(신청)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(1만원), 1개월 이내(3만원), 3개월 이내(5만원), 6개월 미만(7만원), 6개월 이상(10만원)

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

▷ 신고(신청)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(5천원), 1개월 이내(2만원), 3개월 이내(3만원), 6개월 미만(4만원), 6개월 이상(5만원)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**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(신청)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.**

※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

○ **징수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%를 추가경감 가능**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

### <질서위반행위규제법>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### <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>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※ 이 경우에도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

## V 홍보계획

- 홍보기간 : 3. 11(수) ~ 4. 24(금) [45일간]
- 홍보방법
  - 성북소리, 현수막, 각종 게시판 공고, 특히 대면홍보 등
  - 각종 단체회의시 회의자료 등을 통한 홍보
  -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안내 및 안내문 배포 게시
  -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광판 홍보

전광판  
협조문안

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(3.11~4.24)

### ○ 중점 홍보내용

-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
-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안내
-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
-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
  - ※ 과태료의 최대 3/4까지 경감 부과 및 징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% 경감가능

## VI 행정사항

### ○ 일제정리 추진상황 지도·점검

- 동 주민센터 : 자체점검계획 수립, 일제정리 실시
- 행정자치부 및 구청 :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등 점검 실시

※ 3월 중에 실시할 지도·점검계획은 추후  
javascript:onClickSidebar(0);

### ○ 일제정리 결과보고 : '15. 5. 8(금)까지

- 붙임 1. 안내자료 1부
2. 일제정리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1부
  3.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.